

실업인정특례 신청서

(3쪽 중 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1일
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 (수급자격자)	성 명	주민등록번호
	주 소 (전화번호: , 휴대전화번호:)	

특례신청사유	☐ 섬 거주자 ☐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자 ☐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 신청자
--------	--

실업인정 신청방법	☐ 우편 ☐ 팩스 ☐ 정보통신망
--------------	--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65조제8호·제9호·제10호, 제93조의2, 제104조의8제8항 및 제104조의15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·제2항·제3항, 제115조의5, 제125조의4 및 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성남지방고용노동청(성남지청)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사증 사본 등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해외 체류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(해외에서의 재취업 활동을 위한 실업인정특례 신청자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주민등록표 초본	없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다만,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※ 아래 남은 적지 않습니다.

처리	☐ 인정 ☐ 불인정			불인정 이유 :				
결재	담당		팀장		과장		청장·지청장	결재 연월일
								. . .

해외재취업활동계획

※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특례 신청자만 작성합니다.

체류목적		체류지역		출국예정일	
해외취업 희망직종①		해외취업 희망직종②		해외취업 희망직종③	
비자	[] 무비자 [] 비자있음(비자 유형기재 : _____)				
해외체류 예정기간					
해외취업활동 세부계획 (별지작성가능)					
< 해외 인터넷 전송 시 유의사항 >					
▶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, 해외 출국 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해당하는 재취업활동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인터넷 실업인정 처리가 가능합니다. (인터넷 전송시 구인공고문, 명함, 붙임의 “해외 구직활동 확인서”를 반드시 첨부·구인담당자 서명 필수).					
▶ 취업목적이 아닌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.-어학연수, 여행, 해외자원봉사, 가족들과의 동거 등의 목적으로 인한 출국은 해외 취업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.					
▶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체류중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시 한국 시간을 기준 (실업인정일 당일 00:00~17:00)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. 인터넷 실업인정 미 신청시 해당회차의 실업급여는 부지급(소멸) 됩니다. 소득 발생시 미 신고하거나 인터넷 전송을 대리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					
▶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은 대면 면접만 가능하며,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해외 취업포털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입사지원 이나, 온라인 특강 수강 등의 구직 외 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					
▶ 의무출석일인 1차(전체수급자), 4차(전체수급자), 8차(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)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 출석이 필수입니다. 불출석 시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는 부지급(소멸) 됩니다.					
▶ 실업인정 관련 전산문의 1577-7114					
			신청인	(서명 또는 인)	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선택)

본인은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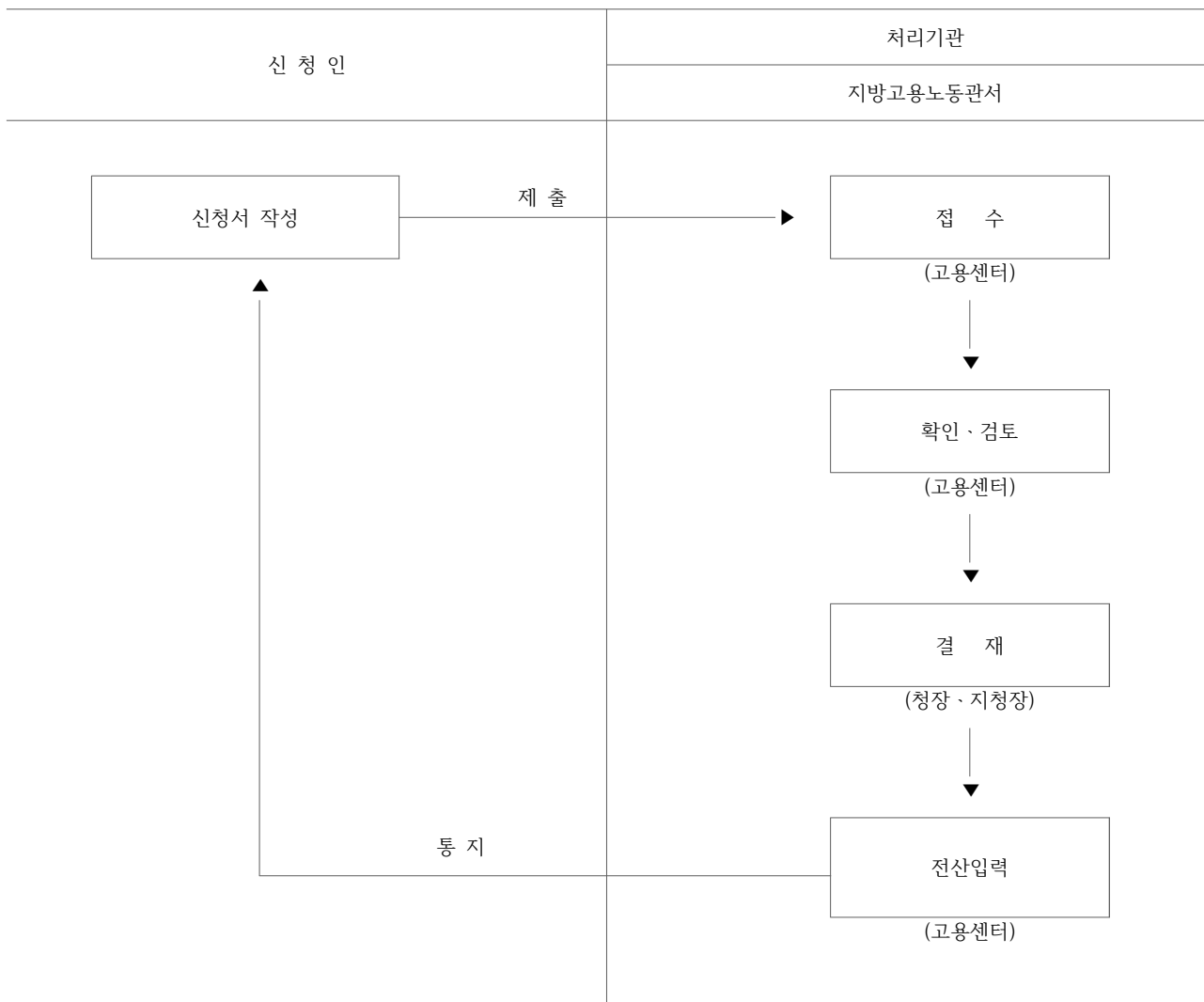
-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: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
-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: 신청인 성명,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
-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: 해당 실업인정 특례 신청 후 3년
-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: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? [] 동의함 [] 동의안함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붙임**해외에서 재취업활동 시 구직활동 확인서-인터넷전송시 반드시 첨부하세요**

*반드시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세요

NAME					
WORK SEARCH REPORT					
DATE	NAME OF COMPANY	TELEPHONE NUMBER	JOB APPLIED FOR	CONTACT PERSON	
				NAME	SIGNATURE

< 해외 인터넷 전송시 유의사항 >

- ▶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, 해외 출국 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해당하는 재취업활동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인터넷 실업인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([인터넷 전송시 구인 공고문, 명함, 붙임의 “해외 구직활동 확인서”를 반드시 첨부-구인담당자 서명 필수](#)).
- ▶ 취업목적이 아닌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.-어학연수, 여행, 해외자원봉사, 가족들과의 동거 등의 목적으로 인한 출국은 해외 취업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.
- ▶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체류중 **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시 한국 시간을 기준 (실업인정일 당일 00:00~17:00)으로 본인 이 신청**해야 합니다. 인터넷 실업인정 미 신청시 해당회차의 실업급여는 부지급(소멸) 됩니다. 소득 발생시 미 신고하거나 인터넷 전송을 대리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
- ▶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은 **대면 면접만 가능하며**,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해외 취업포털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입사지원 이나, 온라인 특강 수강 등의 구직 외 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▶ 의무출석일인 **1차(전체수급자), 4차(전체수급자), 8차(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)** 실업인정일에는 **고용센터 출석**이 필수입니다. 불출석 시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는 **부지급(소멸)**됩니다.
- ▶ 실업인정 관련 전산문의 1577-7114